

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도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9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의의원 : 서도원 의원,

최재규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·면 새마을지도자를 회의에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 근거 신설(안 제3조의2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새마을지도자 회의) ①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읍·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당 20,000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3조의2(새마을지도자 회의) ①</u> <u>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읍·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② <u>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당 20,000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□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(2019. 12. 10. 일부개정·시행)

-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**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: 새마을운동조직 지원
- 나. 지원목적: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 및 새마을지도자 처우 개선
- 다. 지원대상: 686명 *각 읍면 새마을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
- 라. 소요예산: 연간 123백만원 (읍면 본예산 편성-기타보상금)
- 마. 산출내역: 123,480천원 = 686명*월20천원*연 9회

2. 재정수반요인

- 조례 개정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확보 필요

3. 관련조문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」 제3조의2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지도자달성군협의회 및 달성군새마을부녀회 명부에 등재된 읍·면 회장 및 읍·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 기준

나. 추계 결과: 2026년 소요예산 123,480천원

- 686명 * 월 20천원 * 연 9회

다. 재원조달방안: 군수지시사항으로 군비 확보(군비 100%)

5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요 구 액	산 출 내 역	비 고
합 계	123,480		
회원읍	18,720	52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논공읍	12,240	34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다사읍	24,120	67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유가읍	13,680	38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옥포읍	10,080	28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현풍읍	13,680	38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가창면	10,440	29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하빈면	7,920	22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구지면	12,600	35개 마을 X 2명 X 월 20천원 X 9회	

작 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 성 군 의 회 의 원

성 명 (연 락 처)

서 도 원 (☎ 2291)